

뉴저지주 사법부

New Jersey Judiciary

소액 청구

Small Claims - Korean

New Jersey Courts

www.njcourts.gov



Independence • Integrity
Fairness • Quality Service

뉴저지주 상급법원 법률부

특별민사부

소액청구과

Superior Court of New Jersey
Law Division
Special Civil Part
Small Claims Section

배경

소액청구과는 귀하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소액의 돈을 추심하기 위하여 어떤 개인 또는 사업체(피고)를 고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액청구 절차는 다른 법원 절차들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비교적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그리고 많은 경우 변호사 없이 사건을 제소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고소 및 항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뉴저지 주의 소액청구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액청구과

소액청구과는 상급법원의 특별 민사부의 3 개 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2 개 과는 임대인 임차인 및 정규 특별 민사부입니다. 이러한 3 개의 과를 각각 설명하는 개별적인 소책자가 제공됩니다. 소액청구과는 청구 금액이 \$5,000 이하의 사건들을 처리합니다. 이것이 소액청구의 금전적 한도입니다. 귀하의 청구 금액이 이 금전적 한도 이상이지만 \$20,000 이하인 경우, 귀하는 정규 특별 민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 금액이 \$20,000 를 초과하는 사건들은 상급법원 법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청구 한도 이상의 손해를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지만, 소액청구과에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귀하는 청구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을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추가 금액은 차후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소하는 대표적 청구 사건

다음은 소액청구로 제소할 수 있는 일반적인 청구 사례들입니다.

- 서면 또는 구두 계약의 위반
- 선납 계약금의 반환
- 교통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
- 재산의 훼손 또는 손실
- 결함 상품 또는 부실 제작에 대한 소비자 불만
- 수행한 작업에 대한 보수의 지급
- 부도 수표에 대한 청구
- 밀린 임대료 청구
- \$5,000 를 초과하지 않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제소할 수 없는 청구

다음은 소액청구로 제소할 수 없는 일반적인 청구사례들입니다.

- 의사, 치과의사 또는 변호사 같은 전문 직업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
- 결혼 또는 가정 분규에서 발생하는 부양비 또는 이혼수당에 대한 청구
- 유언장과 같은 검인문제에서 발생하는 청구

고소장을 제출하는 곳

고소장은 반드시 적어도 한 명의 피고가 거주하거나 피고의 사업체가 소재한 카운티의 특별 민사부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피고 사업체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카운티 또는 그 사업체를 등록한 카운티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가 한 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소장은 피고들 중 한 명이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카운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 중 아무도 뉴저지 주에 거주 또는 소재하지 않는 경우, 고소장은 소송사유가 발생했거나 시작된 카운티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고소장은 임대인이 거주하거나 임대인의 임대물이 위치한 카운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

소액청구로 고소하려면 제소자의 연령이 18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소자가 18 세 미만이면 고소장은 부모 또는 후견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소액청구 소환장 및 고소장 양식과 이 양식들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서는 뉴저지 주 특별 민사부 사무실이나 njcourts.gov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환장과 고소장은 사법부 전자 문서 제출(JED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해당 특별 민사부 사무실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제출하는 곳](#)” 참조).

원고로서 귀하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 다음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 귀하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
- 고소장이 적절하게 송달되도록 고소장에 피고(들)로 지명된 사람(들)의 정확한 이름(들)과 주소(들)을 제공. 피고가 개인, 개인 사업자, 동업자 또는 법인인지를 식별하여 정확히 기재
-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는 금액을 기재
- 피고(들)이 귀하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이유를 기재

- 현재 귀하와 다른 당사자(들)이 관련된 다른 사건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해당 법원의 이름을 명시
- 작성한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
- 소환장과 고소장을 특별 민사부 사무실에 제출할 때 정확한 접수료와 수수료를 지불. 소정 액수보다 적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귀하에게 반송됩니다.
-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당사자의 **비밀 개인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이런 정보에는 소송 당사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운전면허 번호, 차량 번호판 번호, 보험증서 번호, **사용 중인 금융 계좌 번호, 사용 중인 신용카드 번호**, 또는 개인의 군복무 상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런 정보는 오직 법, 법원 명령, 법원 규칙 또는 행정 명령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공하십시오. 귀하의 서류 원본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은색으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사용 중인 금융 계좌 번호가 소송의 주제이고, 달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마지막 4 자릿수를 제출하십시오.

소환장과 고소장이 제출 및 송달되면, 모든 당사자, 소환장과 고소장에 지명된 모든 원고와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재판 날짜를 통고받을 것입니다.

만약 피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를 “결석”으로 판결할 것입니다. 법정은 재판 날짜에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석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주고 갚아야 할 금액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개인 피고가 미군 현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체 피고에게는 군 현역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석판결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기번호 패킷은 뉴저지 특별 민사부 사무실과 njcourts.gov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교통 사고로 인한 금전 배상에 대한 것이고, 피고가 \$500 이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 피고는 그 금액을 60 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피고가 60 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특별 민사부 사무실을 통하여 뉴저지주 차량국(New Jersey Motor Vehicle Commission)에 판결금액이 지불될 때까지 피고의 운전 및 등록 특권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 또는 편의시설

사법부는 장애인이 법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역 ADA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연락 정보는 njcourts.gov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사법부는 법정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법원에 가능한 한 빨리 알려 주십시오: 관련 정보는 njcourts.gov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료

특별 민사에 속하는 고소장 접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1 명인 경우 \$35
- 피고 1 명이 추가될 때 마다 \$5
- 등기 및 일반 우편 송달 수수료는 각 피고 당 \$7 입니다. 고소장을 특별 민사부 직원이 직접 송달하는 경우, \$3 의 재송달료에 더하여 특별 민사부 직원의 송달 처리 수수료 \$7 가 부과됩니다. 직접 송달을 원하는 피고가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 추가 수수료 \$5 에 더하여 송달 처리 수수료 \$7 이 부과됩니다.
Treasurer, State of New Jersey 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나 머니 오더로 지불하십시오.
- 6 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재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 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원 접수료를 지불할 여력이 없으면, 빈곤자로 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판사가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재판 준비

원고

귀하가 원고인 경우에는 귀하의 주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제시 가능한 모든 증인과 기록을 준비하십시오. 서면 진술서는, 비록 선서 하에 작성된 것이라도, 법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증인(들)이 실제로 듣고 본 것에 대한 법정 증언만이 허용됩니다. 귀하가 질문할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사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한 기록을 법원에 제시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불필 수표, 머니 오더, 영수증
- 청구서, 계약서, 견적서, 임대계약서
- 서신
- 사진
- 청구액을 입증하기 위한 기타 서류

재판 일자 전에 피고와 합의할 경우, 특별 민사부 사무실로 즉시 전화하여 사건이

합의된 것으로 기록되도록 확인요청을 하십시오.

피고

귀하가 피고인 경우,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하의 사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정된 재판 당일에 제시 가능한 모든 증인들과 서류들을 법원에 제시할 준비를 하십시오. 만약 귀하도 원고를 고소하고 싶으면, 예정된 재판 날짜 이전에 고소해야 합니다. 특별 민사부 사무실 직원이 고소장을 어떻게 제출하는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원고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판사는 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참석하지 않으면, 결석판결을 받을 수 있고, 피고는 갚아야 한다고 주장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일자 전에 원고와 합의할 경우, 특별 민사부 사무실로 즉시 전화하여 사건이 합의된 것으로 기록되도록 확인요청을 하십시오.

재판 당일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피고는 소환장에 제시된 설명에 따라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원고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법정에 출두하라는 특별 민사부 사무실에서 보낸 별도의 통지서를 받습니다. 모든 당사자들은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악천후로 인하여 법정이 문을 닫는 경우에는 재판 날짜가 변경됩니다.

재판이 예정된 날, 판사는 당사자들(원고와 피고)이 전문 합의 조정자와의 합의 논의를 통하여 사건의 합의를 시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조정자는 원고와 피고가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조정자는 판사가 아닙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해 같은 날에 판사 재판이 열리도록 법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귀하가 원고이며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관련 소책자, 금전 판결의 추심(*Collecting a Money Judgment*)을 참조하십시오. 이 소책자는 뉴저지주 특별 민사부 사무실과 njcourts.gov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권

원고 또는 피고로서 판사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판결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상급법원 항소부에 사건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항소 통지서, 재판기록 녹취록 요청서(Request for Transcript) 사본 1 부 및 사건 관계 서류(Case Information Statement)를 45 일 이내에 Richard J. Hughes Justice Complex, PO Box 006, Trenton, NJ 08625 에 소재한 항소부(Appellate Division)의 서기에게

제출하고 사본들을 아래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법정에 참석했던 모든 사건 당사자들
- 항소를 접수한 곳의 특별 민사부 사무실
- 사건을 판결한 판사

귀하는 반드시 항소 통지(Notice of Appeal) 일시로부터 30 일 이내에 항소부 서기에게 항소 통지서와 \$250 의 접수료를 지불하고, \$300 를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항소에서 패소하는 경우 합의금 지급 또는 법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공탁금은 환불됩니다.

귀하는 재판의 녹취록을 반드시 입수해야 합니다. 녹취록은 해당 사건이 진행된 카운티에 위치한 특별 민사부 사무실에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는 녹취록을 준비할 법정 속기사, 서기, 대행 회사가 결정한 녹취록의 예상 비용, 또는 재판 1 일당(하루 또는 하루의 일부) \$300 를 서기에게 공탁해야 합니다. 귀하는 녹취록 3 부를 항소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에 관한 문의는 항소부의 서기(609-815-2950) 또는 변호사에게 해야 합니다.

이 소책자는
뉴저지주 사법부
민사소송부가 제작했습니다.

스튜어트 래브너
수석판사
Stuart Rabner
Chief Justice

글렌 A. 그랜트
법원 행정처장 대리
Glenn A. Grant
Acting Administrative Director of the Courts

제니퍼 M. 페레즈
1 심법원 실장
Jennifer M. Perez
Director, Office of Trial Court Services

타이론다 E. 피닉스
민사소송 부실장
Taironda E. Phoenix
Assistant Director, Civil Practice

2022년 7월 1일 개정

CN 10290-Korean